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공사(종합공사) 발주 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제한입찰 한도금액을 현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,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호가목 중 “100억원”을 “150억원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4항 중 “전날”을 “현재 180일 이전”으로, “이후를 포함한다]”를 “현재 180일 미만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]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제한입찰 대상에 대한 적용례) 제2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지역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대한 적용례)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지역제한입찰의 대상)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“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1. 공사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 른 종합공사는 <u>100억원</u> 나. (생략) 2. (생략)	제24조(지역제한입찰의 대상) 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가. ----- ----- <u>150억원</u> 나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제한입찰의 제한기준) ① ~ ③ (생략)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<u>전날</u> [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)인 경우 입찰공고일 <u>이후</u> <u>를 포함한다]</u> 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· 도(인접 시·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·도까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관할구역 안 에 있어야 하고, 낙찰자는 계약	제25조(제한입찰의 제한기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현재 180일 이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현재 1</u> <u>80일 미만인 경우를 포함할 수</u> <u>있다]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 해당 시·도의 관할구역 안 에 있어야 한다. ⑤ ~ ⑦ (생 략)	----- ----- -----.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-